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19가단1359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750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19가단1359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김진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장다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운

변론종결 2021. 10. 12.

판결선고 2021.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18,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218,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제휴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가진 고객들을 상대로 증권계좌에 예치된 주식 등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RMS)을 통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담보가치 평가, 질권행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험관리시스템이란 대출채무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작동되어,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C이 안정적으로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원고는 2018. 7. 4.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사건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고, 위험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C의 손실(대출원금 기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C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상

고객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대위변제한 고객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내용의 자금대출상품을 D의 영업망을 통해 널리 홍보/광고하는 내용의 마케팅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7. 12.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D가 원고와 제휴한 주식매입자금대출상품을 E의 영업망을 통해 홍보/마케팅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받은 고객들로부터의 이자, 상환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도 응대하고 있다.

라. 피고는 E을 통해 2018. 8. 27. C으로부터 피고의 2개의 F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계좌당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주식 45만 주를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3억 원씩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대출 약관, 계좌운용규칙 등에 의하면, 정규시장 종가기준 계좌담보비율이 120% 이하에 도달 후 다음 날 08:45까지 담보비율이 12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출원금 상환금액 수량만큼 자동으로 반대매매(로스컷)가 실행되고, 로스컷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바. 2019. 1. 22. G의 주식은 가격이 폭락하며 매수불가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각 계좌의 담보비율이 120%에 미달하자 그 다음 날인 1. 23. 09:00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실행되어(이하 '이 사건 반대매매'라 한다)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사. 그러나 C이 이 사건 반대매매로 인하여 변제받지 못한 대출원금이 남게 되자, 원고는 2019. 1. 30. C에 잔여 대출원금액인 93,609,261원과 93,608,797원을 각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187,218,058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 22. G 주가 폭락으로 이 사건 각 계좌의 담보비율이 120% 이하로 떨어져 이 사건 대출을 주선하고 위험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고객 상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E의 직원 H에게 반대매매실행을 막기 위하여 G 주식 10만 주의 추가입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위 주식 입고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원고와 E의 직원들은 G 주식의 추가입고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피고는 현금입금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계좌뿐 아니라 G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른 모든 계좌에서 총 3,722,450주에 대한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C의 이행보조자인 원고 및 E은 고객에게 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반대매매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E은 피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의사결정을 지연, 번복하는 등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G 주식 3,722,450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 근거 및 을 제10, 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는 2019. 1. 22. 16:15경 G 주식을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3일간 주가변동률 -25.53%, 3일간 최대지점 (계좌)관여율 26.41%, 3일간 5개 지점 (10개 계좌) 관여율 45.66%]을 이유로 2019. 1. 23.자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하였다.

계좌운용규칙에 의하면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종목은 매매거래금지 종목으로 매수가 불가능하고, 매수불가종목은 입고가 불가능하다.

② E 직원 H은 원고와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는 업무시간 내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처리하여 왔는데, 2019. 1. 22. 18:00 무렵 피고로부터 G 주식의 추가입고를 통해 반대매매 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달라는 문의전화를 받았다.

H은 정상적인 업무시간이 지나 원고 담당자에게 피고의 문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자신의 상급자인 J에게 피고의 문의사항을 알렸고, 원고의 직원 K와 통화한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G 주식의 추가입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전달해주었다.

③ J은 같은 날 20:00경 K로부터 ‘입고불가사유에 해당한다. G 주식을 담보로 추가입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 내일 다시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H은 그 다음 날 출근하여 07:50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즉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그 사정을 알려주었다.

④ H은 같은 날 08:30경 J으로부터 G 주식의 추가입고는 받아줄 수 없고 반대매매실행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현금을 추가 담보로 입금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입장을 전달받고 피고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직후 원고는 08:49경 이 사건 각 계좌당 20만 주씩 입고하면 받아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08:51경 계좌당 우선 각 10만 주를 입고하고 나머지 각 10만 주를 추후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다.

⑤ 피고는 위 추가입고로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09:00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 G 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⑥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 후 2018. 11. 26. 이 사건 각 계좌의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실행이 위험이 있자 같은 날 21:53:05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을 추가로 입금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나 E과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

(나) 먼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의 담보 실행 등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원고는 C에 대하여 그 업무협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 C의 거래상대방인 피고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반대매매와 관련하여 추가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주식인지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계좌운용규칙 등에 의하면, 반대매매 실행 전에 고객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② 계좌운용규칙에 의하면 투자주의 종목은 매수불가사유로 정해져 있어 추가입고가 불가능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E의 H에게 G의 주식을 추가입고를 허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③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입고가 불가능한 G 주식의 추가입고를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계좌운용규칙에도 불구하고 G 주식의 추가입고를 허용하더라도,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입고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면 그러한 방안을 배제한 채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④ 원고는 2019. 1. 22. 18:00경 피고로부터 문의를 받은 E에 G 주식의 추가입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나, 2019. 1. 22. 20:00경에는 E에 G 주식의 추가입고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은 2019. 1. 23. 07:50경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반대매매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 한해서만 G 주식의 추가입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을 뿐 L 명의의 2개

계좌에 관하여는 추가입고가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L 명의의 2개 계좌에 관하여도 G 주식의 추가입고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 반대매매를 막을 다른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되면 다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다른 계좌에 대하여도 곧바로 담보가치가 기준비율 이하로 떨어져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¹⁾ 그렇다면 위 L 명의 2개 계좌의 반대매매로 인하여 어차피 다른 계좌에 대하여도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⑥ 원고가 G 주식의 추가 입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현금이 부족하여 G 주식의 추가입고를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금을 즉시 마련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1) 2019. 9. 11.자 준비서면, 2021. 10. 19.자 참고서면.